

“리조트 참사 재발 막자” 국토부, “건축물 안전관리” 대폭 강화

특수구조건축물 ‘구조안전기준’ ‘유지관리’ 개선대책 마련

- 앞으로 기둥간격이 20미터 이상인 건축물, 공업화 박판 강구조(PEB: Pre-Engineered Building) 등 특수구조 건축물*은 착공 전까지 구조안전성 심의를 받아야 하며, 감리 과정에서 건축구조기술사의 현장 확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준공전까지 유지관리매뉴얼을 작성하여야 한다.
 * 예시 : 30층(공동주택 제외) 또는 높이 120m 이상 건축물, 경간 20m 이상인 건축물, 캔틸레버로 3m 이상 돌출 건축물, 철근콘크리트 또는 일반철골 외의 재료가 3개층 이상의 주골조로 사용된 건축물, 특별한 설계, 시공, 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폭설 등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특수구조 건축물에 대한 제도상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해 ‘건축물 안전강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발표한 건축물 안전강화 대책은 ‘건축물 안전강화 전문가 태스크포스(T/F)’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마련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폭설 등 기상이변에 대비해 건축기준을 개선한다.

- 올해 5월까지 건축구조기준을 개정하여, 현재 반영하지 않고 있는 습설하중을 모든 건축물에 대해 25kg/m²를 반영하되, 지붕의 경사도를 고려하기로 하였다.

기둥 간격	12 미터	20 미터	40 미터	60 미터	80 미터	100 미터
경사도	21°	33°	53°	63°	69°	73°

② PEB(공업화 박판 강구조) 등 ‘특수구조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14.10월 건축법 시행령 개정 등)

- PEB 건축물 등 특수구조 건축물은 설계·허가·시공·유지관리 전과정에 대해 특별히 관리하기로 하였다.

- 현재는 설계시 기둥 간격 30미터 이상인 경우에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하나, 앞으로는 기둥간격 20미터 이상 건축물로 협력대상을 확대하였다.

- 건축구조기술사의 도장 대여 등 형식적 검토를 방지하기 위해 PEB 설계기준을 마련해 구조기술사가 확인해야할 사항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

- 특수구조 건축물은 감리시에도 건축구조기술사의 확인을 받도록 신설하되, 내실있는 감리를 위해 특수구조 건축물 제작사는 구조상세도면을 제출하도록 하고, 건축구조기술사는 반드시 구조상세도면대로 시공되는지를 현장에서 확인하도록 하였다.

- 특수구조 건축물의 건축주는 구조안전성에 대하여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되, 건축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착공전까지 건축주가 원하는 기간에 심의를 받을 수 있고, 심의신청일부터 15일내에 심의를 완료하도록 하였으며, 향후 건축물 소유자가 유의해야할 유지관리매뉴얼을 제공하도록 하였다.

③ 건축관계자의 역할과 책임이 강화된다.

- 감리자는 철강 등 자재가 적절하게 제작되는지 공장에서 확인하고 현장에 반입되는 과정을 확인하도록 감리지침(건축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이 구체화된다.

- 현재 다중이용건축물 건축과정에 위법행위를 한 설계자·시공자·감리자에 대해 최대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모든 건축물로 확대하고 위법행위를 한 건축주와 관계전문기술자까지 처벌대상을 확대하였다.
-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발표한 대책 외에, 국회에서 건축주의 지붕제설 의무화에 관한 입법(김관영 의원, 자연재해

대책법)이 추진중이고 안행부는 다중이용 건축물 외에 특정관리대상시설물 확대를 추진중이며, 일선 지자체는 건설업 면허대여 등 위법행위 단속 강화 등이 추진되고 있음을 소개하고,

- PEB 전수조사 완료후 안전관리 연구용역, 기후변화 대비 건축기준 개선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추가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일보

[신임단체장에게 듣는다] 서규석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회장

“구조안전기본법 제정 건축물 구조안전 확보해야”

설계·시공·유지관리 단계 반드시 구조기술사 참여 제도화

건축물 안전 ‘비정상화의 정상화’로 국민생명 책임져야

[국토일보 김광년 기자]

“이 시대 최대의 당면과제는 ‘건축구조 안전문제에서 비정상화의 정상화’입니다. 국민생명을 지키는 일인데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신임 회장으로 선출된 서규석 회장. 그는 협회장으로 당선되자 마자 미관위주의 건축심의 문제까지 이렇게 갈 것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개인 또는 기업의 영리추구를 벗어나 범 국가적 차원에서 국민생명을 보호해야 한다는 진정성 있는 이 주장에 누가 돌을 던질 것인가! 건물이 붕괴된 것은 우리 모두의 자존심이 붕괴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슬픔과 노여움이 오버랩되는 그의 눈빛에서 건축구조 전문가 프로의 모습을 읽을 수 있다.

지난 달 경주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고와 관련 건축구조기술사회장으로서 더욱 더 깊은 애도와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는 그는 앞으로 더 이상 이러한 후진국형 안전참사는 이 땅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3층이상 내진설계는 구조기술사가 해야 할 것이며 구조기술사 확인대상의 경우에는 구조감리가 절대 필요하며 뿐만 아니라 설계, 시공, 유지관리 단계서 구조기술사가 반드시 참여토록 법제화돼야 합니다.”



이른바 지금까지 건축구조 안전의 잘못돼 왔던 부분 즉 ‘비정상화의 정상화’를 위해 앞장서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구조기술사 스스로도 소명의식과 책임감을 발휘하고 전문가로서의 전문성 및 봉사정신을 최대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써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을 비롯, 독일, 싱가폴, 홍콩, 일본 등 구조감리를 제도화 또는 관행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중국에서도 설계와 감리분야에서 구조기술사가 해당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외 주요선진국의 구조설계 및 감리제도 현황을 제시하며 국내 제도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서규석 회장.

그는 인터뷰를 마치며 강조한다.

“국민생명을 책임질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즉 ‘구조안전

기본법’을 제정, 명실상부한 건축물 안전 선진화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20년 전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삼풍백화점이 붕괴됐을 때와 지금 이 시간 무엇이 달라졌는지… 부끄러운 사고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국내 실정을 볼 때 특단의 대책이 촉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김광년 기자 knk@ikld.kr

『국가지진정보시스템 홈페이지』 개통

기상청(청장 安明煥)은 국민이 지진에 관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국가지진정보 홈페이지(www.kmaneis.go.kr)를 개통하였다.

국가지진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만든 국가지진정보 홈페이지에는 지진업무, 관측장비 및 관측망의 소개와 지진파형자료, 과거 지진기록지(1963~2002년)의 이미지 등 과거에 발생한 지진 정보가 체계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수록되어 있으며, 지진 및 지진해일에 관한 지식과 지진에 관한 질의 답변 코너를 설치하였다.

최근 지진발생현황은 지진이 발생하면 수 분내에 자동적으로 업데이트가 되며, 1978년 이후 발생한 지진에 대해서는 연도별 목록과 진양분포도를 보여준다. 특히 2000부터 현재까지 지진파형 자료가 제공되고 1963년부터 2002년까지 아날로그 기록지 중 지진 발생 자료는 이미지로 제공하고 있다. 국가지진정보시스템의 홈페이지(www.kmaneis.go.kr)는 기상청 홈페이지(www.kma.go.kr)를 통해서도 들어갈 수 있다.

기상청은 사전 예측이 불가능한 자연 현상인 지진이지만 지진이 발생하면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통보하기 위해 24시간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지진 방재를 위해 지진 장비현대화 및 관측망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문의 : 기상청 지진담당관 우 덕 모전화: (02) 843-4228